

교훈 : 성실 	<h1>가 정 통 신 문</h1>	제 2022 - 85 호
	<h2>학부모 정보통신윤리 안내</h2>	담당 : 과학정보부
		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☎ (교무실) 031-365-8200 ☎ (행정실) 031-365-8207

1 정보통신윤리란?

- ▶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, 좋음과 나쁨,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.

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?

- ▶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, 안전하며,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.
- ▶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.
- ▶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.
- ▶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.

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

- ▶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.
- ▶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.
- ▶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.
- ▶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.
- ▶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.
- ▶ 인터넷상에서는 이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, 학교이름,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.
- ▶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채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.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.

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

- ▶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▶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,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.
- ▶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.
- ▶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,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.
- ▶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.
- ▶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.

5

우리아이 네티켓 키우기

- ▶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.
- ▶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.
- ▶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는다.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,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.
- ▶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다.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.
- ▶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. 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.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.
- ▶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.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,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.

6

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

▶ 게임관련 정부규제 제도

-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

: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.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함.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함.

- 게임시간 선택제

: 학생들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.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음. 부모님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
※활용방법 : 게임문화재단([www. gamecheck.org](http://www.gamecheck.org))에서 학생의 게임이용 실태 파악학생과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(게임 이용시간, 게임종류)→게임사이트에 방문하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신청→게임회사는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게임시간 제한

2022. 6. 3

시흥가온중학교장[직인생략]